

제 716 호

1979. 6. 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편집 : 문화공보관 김일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 례

◎ 조 례

제 1339 호 :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개정조례..... 3

◎ 훈 령

제 504 호 : 서울특별시시민복지기탁금관리규정..... 3

◎ 고 시

제 24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5

제 241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및 도시계획
시설 (공원) 지적승인..... 5

제 24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775

제 243 호 :	취락구조개선사업을위한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6
제 244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7
제 245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및지적승인	8
제 246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8
제 247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9
제 248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9
제 24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0
제 250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11
제 251 호 :	취락구조개선사업을위한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1
제 25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변경승인	12
제 25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변경과지적승인	12
제 255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 미관지구) 지적승인	13
제 25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4

㉠ 공 고

제 19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4
제 196 호 :	환시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6
제 197 호 :	환시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6
제 198 호 :	하천공사 (면목천부개공사) 시행허가	17
제 48 호 (천호출장소공고)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17
제 28 호 (교육위원회공고) :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	18

㉡ 예 규

제 384 호 :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18
-----------	----------------------------	----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79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339 호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1항에 "제 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등록세

제 3조 제 3항중 "자동차의 취득세"
를 "자동차에 대한 제 1항의 시세"
로 한다.

제 5조 제 1항중 "면허세" 다음에
"등록세"를 삽입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 3160
호(79.4.16) 지방세법중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시민복지 기탁금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9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서울특별시훈령제 504 호

서울특별시시민복지기탁금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시민복지 기탁금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
시내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조 (기탁금의 관리) ①시민복지
기탁금(이하 "기탁금"이라 한다)은
본청 및 구청은 사회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주관과장은 접수한 기탁금을 시
민복지 기탁금 수입으로 별도 계
정하여야 한다.

제 3조 (기탁금 관리금고의 설치)

①부청 및 각구·출장소에 기탁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금고를 1 개소씩 설치 운영한다.

②권함에 의한 금고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개나리상조금고"라 한다.

③서울특별시 개나리 상조금고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기탁금 접수창구의 상설)

본청 및 구청사회과, 출장소총무과, 등 민원창구에 기탁금 접수창구를 상설 운영한다.

제 5 조 (기탁금의 수혜대상) 기탁금의 수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 생활보호 대상자
3. 정착촌 음성실환자
4. 냉마주이등 불우단체
5. 불우직업소년
6. 원호대상자
7. 독립유공자등 국가에 유공한자
8. 사회복지봉사단체
9.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10.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

제 6 조 (기탁금의 사용구분) ①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탁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탁금의 지출은 무상지원과 대부토 구분 실시한다.

다만, 본청에서는 무상지원만 실시한다.

제 7 조 (기탁금의 지출절차) 기탁금의 지출절차는 개나리상조금 운영요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조 (이식의 도모) 기탁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식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식은 기탁금 수입으로 한다.

제 9 조 (지도감독 및 결과보고)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탁금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할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탁금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탁금 관리실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케 할 수 있다.

③본청 사회과장은 매년도 기타금 관리사항을 (구.출장소포함) 결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제정되어 있는 이웃돕기 성금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나리 상조금고에 이체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4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200 호 (1979. 5. 12)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녹번천정비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 3. 16)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은평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6. .

서울특별시장

(다음)

1. 사업시행지 : 서대문구대조동 15번지 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로및하수도시설
3. 사업의 규모 : B= 29m, L= 45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은평출장소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 : 1979. 12. 30

6.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240 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토지조서 : 생략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인가조건)

별첨 개략 설계도서 (명견도 생략)에 의하여 시공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241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205 호 (79. 5. 15)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77. 3. 16)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6. 5.

서울특별시장

○ 지적승인조서				
구분	사업명	면적	위치	비고
신설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17,890㎡ (5,412명)	성수동 2가 74-1 일대	사업구역내
	어린이공원	826㎡ (250명)	성수동 2가 74-5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42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217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건설부고시제 41호 (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6. 5.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학교용지	용산구이촌동 300-302	11,938㎡ (3,611.2명)	한강중학교
기정	"	" " 300-302		"
변경	"	" " 300-327	15,624㎡	1,114.8명추가
	"	" " 300-304	(4,726명)	

◎서울특별시고시제 243 호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83호 (79.2.26)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161호 (79.4.19)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고시제 41호에 (77.3.16) 의거 이를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6. 5.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의시행지 : 강서구의발산동 220-1의 63 필지</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위락구조 개선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p> <p>3. 사업의규모및면적 : 30,763㎡ (9,305.8 명)</p> <p>4. 사업의시행자주소, 성명 : 강서구의 발산동산 36번지 최 용 회</p> <p>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 허가시행일로부터 7 일 이내 나. 준공 : 79.7.19</p> <p>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 (별첨조서참조)</p> <p>7. 시설조서 (별첨조서참조)</p> <p>8. 허가내용 (별첨허가도서)</p>	<p>◎ 서울특별시고시제 244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 (농원) 지적승인</p> <p>1. 건설부 고시 제 138 호 ('77.7.9) 및 건설부 고시 제 104 호 ('79.4.4) 로 제정비된 도시계획시설 (농원)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 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9.6.7 서울특별시장</p>
---	---

○ 도시계획시설 (농원) 지적승인 조서

번호	농원종류	농원명	위치	면적 (㎡)
근 10-20	근린농원	여의도자매농원	여의도동	16,500
근 09-04	"	한 남 농 원	용산구한남동	28,197
근 07-04	"	녹번제 1 농 원	녹번동	25,530
근 07-05	"	녹번제 2 농 원	"	34,500
근 07-07	"	역촌 농 원	갈현동	52,500
근 07-08	"	구 산 농 원	구산동	32,300
18	자연농원	구 립 산 농 원	시흥군서면하안리	574,466
묘 03-01	묘지농원	망우묘지농원	망우동	832,800
9	자연농원	용 마 농 원	동대문구면목동	5,146,400
				중 3,696,400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5 호</p> <p>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결정및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권</p>	<p>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고시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광명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9.6.8 서울특별시.장</p>
--	---

○ 시설 조 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흥군광명리 342 일대	1,98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6 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계획 인 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1 호(78.5.15)로 시설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2 호(78.7.24)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 농고 제 146 호(79.5.8)로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에 따른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된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를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철호출장소 도시정비</p>	<p>과와 토목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9.6.8 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지 : 강남구성내동 319-40 성내동 355-8 번지간</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하수도)공사 (통합 청사 진입로 개설)</p> <p>3. 사업규모 :</p> <p>가. 도로개설 폭=20미터 연장=395미터</p> <p>(1) 아스팔트 면적=53.8</p> <p>(2) 하수도 압거 연장=135미터 합판연장=535미터</p> <p>(3) 보도부닥 면적=13.8</p>
---	--

4.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천호출장소장
 5. 사업의착공예정일: 1979.5-79.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7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2 호(79.5.24)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8
 서울특별시 장

가. 학교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평방미터)	비고
신설	예림여자고등기술학교	강남구운정동산7의10	3,448㎡ (1,043평)	
"	안흥공업전자학교	강남구상일동264의3필지	7,933.5㎡ (2,400평)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8 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8 호(79.4.24)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 및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8
 서울특별시 장

가. 하수도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설	하 수도	6	35	풍납동 155-26	풍납동 155-28	
"	"	6	385	풍납동 156-8	풍납동 237-8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313 호(78.10.20)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함.

3. 관계도서는 **용동산** 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9.6.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위치: 용산구원효로 4가
부근

영등포구여의도동 여의국교 및 시범아파트 주변

2. 사업의종류및명칭: 원효대교 건설공사

3. 사업규모:

북단 (1) 램프 B=7-12미터
L=1,034 #

(2) 녹지대 3,281 평

(3) 도로 21,779 평

남단 (1) 램프 B=10.8-43
L=538

(2) 녹지대 143 평

(3) 도로 3,488 평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착수및준공예정일: 197 . 인가일
~1980.12.30

6. 사용도는수용할재산의소재지: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토지조서

◎ 서울특별시고시제 250 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 결정조서

하였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9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하수도	12-20m	75m	홍지동	72-2	홍지동	74-6	
신설	"	3.5m	200m	누상동	168-127	육일동	177-13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51 호
 위락구조개선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38호(79.4.2)로 결정된 강서구 신태동 765일대에 대하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7조의 2와 건설부 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11
 서울특별시장

위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가. 변경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위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강서구	신태동 765일대	65,453			
위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강서구	신태동 765의 103 필지	66,055			

나.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강서구 신정동	765의 103 필지	66,055㎡

별첨 조서와 같음 (조서생략)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53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변경승인

1. 건설부 고시제 109 호 (76.9.19)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적변경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이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은명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12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변경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존	중로	2급	59	15	100	용암동 221-64	용암동 229-7	
변경	"	"	"	"	"	"	"	위치 (노선) 조정

◎ 서울특별시고시제 25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12
 서울특별시장

○ 노선조사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면 장	기 점	중 점	비 고	
건설	소로	2		8	200	내곡동 180	내곡동 153	결 정	
"	"	3		6	170	" 1-231	" 1-145	"	
"	"	"		"	320	" 1-1208	" 1-1213	"	
"	"	"		"	90	" 1-1213	" 1-1216	"	
"	"	"		"	140	" 1-1217	" 산 13-196	"	
"	"	2		8	360	우 면 295-1	우 면 646	"	
"	"	"		"	490	" 148	" 205	"	
기정	"	1		10	70	홍제동 250	홍제동 253		
변경	"	"		"	60	"	" 372		지적승인포함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55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미관지구) 지적승인					원지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 개발특별시 고시 제 440 호 (78.8.29) 및 제 262 호 (77.8.2) 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미					1979.6.13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건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신촌여객)	서대문구 북가좌동 산 44의 4 필지	4,489㎡ (1,357.7명)	서울시고시제 440 호 (78.8.29)					
나. 도시계획시설 (미관지구) 지적승인 조서									
구분	순위	지 구 명	종별	기 점	중 점	면 장	비 고		
기정	26	노선미관지구	2층	동교동	수 석 동	5,400	도로양측 12		
변경	26	"	"	남가좌동 (사천교)	"	4,330	1,070	속소	
기정	34	"	4층	연대입구	연대입체교차	1,200	도로양측 12		
변경	34	"	"	"	남가좌동 (사천교)	2,270	1,070	연장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21-14 제 716 호 시

보 1979.6.12

◎ 서울특별시고시제 25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59 호(79.4.19)로 결정된 도봉구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77.3.16)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13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중로	1	205	20m	140m	상계동 172-86	상계동 156-118	하수도

별첨 도면표시와 갈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9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 호(75.2.4)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천호동 37-1에서 강남구 천호동 233-5 번지간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구간내에 저촉면입되는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저 이에 공고하며,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천호출장소 토목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장위치 : 강남구 천호동 37-1에서 천호동 233-5 번지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공사 (천호중학교 신입로 개설공사)

<p>3. 시설의 규모 : 가. 도로개설 $L = 732$미터 $B = 15$미터 - 20미터 (1) 아스팔트포장 $A = 75.2$ a (2) 보도부력포장 $A = 37.5$ a (3) 옹벽 $L = 140$미터 (4) 하수도 (600% : $L = 485$미터) (800% : $L = 100$미터)</p>	<p>4. 사업시행자 : 천호출장소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79.5 - 79.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빈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p>
<p>토 지 조 서</p>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강남구천호동	239-4	대	60	천호동 233-4	계해수의 2
"	234-1	답	353	암사동 528	박용재
"	233-68	대	571	천호동 233-4	계해수의 2
"	232-18	"	161	명일동 95	김학영
"	230-8	"	2	상	동
"	224-11	답	188	계기동 892-144	윤기환
"	224-12	"	212	상	동
"	224-10	"	579	상	동
"	224-7	"	519	상	동
"	224-23	도로	377	한남동 741-9	이숙환
"	225-7	대	506	태평로 1가 64-8	한국통신기업 영동조합
"	225-8	"	204	천호동 225-1	김광찬
"	225-4	"	7	낙원동익촌지구 408-2	최칠우
"	227-24	"	248	만리동 221-171	최석림
"	227-10	건	602	중남동 227-24	최덕동
계	15필지		4,589		

건 물 조 서							
소재지	지 번	용 도	구 조	진 평		소 유 자	
				총건평	철거평수	주 소	성 명
강남구 천호동	233-5	영업용	육부력조 스레트층	11 평	11 평	천호동 233-4	제해수 외 2인
계					11 평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6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 변경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변경내역)

1. 사업명 : 신림토지 구획정리사업
2. 변경위치 : 관악구신림동 69-50의 2 필지
3. 변경면적 : 360 평
4. 변경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보관)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7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김포 및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6.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경인및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내역 : 김포지구 및 경인지구내 목동114-1의 5 필
3. 변경도서 : 생략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
4. 변경면적 : 381.7 평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8 호

하천공사 (면목천복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면목천복개공사) 시행허가를 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한다.

1979.6.12

서울특별시장

가. 허가년월일 : 1979.6.12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대문구 면목동지내 면목천 하류

다. 목적 : 도로개설및채천부지양여

라. 허가내용 : B=20-25m L=628m 하천복개

마. 공사기간 : 허가일로 1년

바. 수허가자 : 서울특별시 총무로 5가 52-25 주식회사 실양사 대표이사 이 두 학

◎ 천호출장소공고제 48 호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계 제 6 조 2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동파동장공 인을 사용승인 하였기 관인규정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9.6.4

서울특별시천호출장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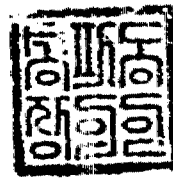
1. 공인개각사용개시일자 : 1979.6.11부터
2. 개각된 공인명
 - 송파동장의인
3. 공인개각인명다음

다 음

송 파 동 장 의 인



구



신

◎ 서울교위공고제 28 호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

공립 초·중등학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자가. 연 령

- 1) 60 세 이상
- 2) 신체 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 세 이상

나. 경 령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 경력 통산)

- 1) 30 년 이상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 년 이상

-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
- 나) 재직중 각급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
- 다) 재직중 시, 도 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

- 2. 수당지급일 : 1979년 8월 31 일
- 3. 신청기간 : 1979.7.1-7.10 (10일간)
- 4. 신청절차

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독청

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5. 지급액

기준 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

6. 지급절차

가. 대상자 결정 통지

지급 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 또는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한다.

나. 수당지급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

1979.6.1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



◎ 서울특별시에규제 384 호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
처리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직업안정업무 처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8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8 조(광역취업알선의 금지) ①소장은 여자 및 18 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를 넘어서는 광역취업 알선을 일체 할수 없다.

<p>② 18세 이상 남자의 광역취업 알선 시에는 알선과 동시에 관할 구청 장에게 그 내용을 별첨 제 18 호 서식에 의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p> <p>③ 여자 및 18세 미만자의 광역취업알선은 서울특별시립 직업안정기관에 서면 행한다.</p> <p>제 23 조 제 3 항 10 호 중 "광역취업알선을 한자"를 "여자 및 18세</p>	<p>미만자의 광역 취업알선을 한 자"로 하고 제 4 항에 1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6. 광역 취업알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전	개 정 후
<p>제 18 조 (광역취업알선의 금지)</p> <p>① 소장은 서울특별시제를 넘는 광역취업알선을 일체할 수 없다.</p> <p>② 신설</p> <p>③ 광역취업알선 업무는 노동청 서울특별시립 직업안정기관에 서면 행한다.</p> <p>제 23 조 (행정처분)</p> <p>③ 영업정지 30일 이내</p> <p>10. 광역취업알선을 한 자.</p> <p>④ 영업정지 20일 이내</p> <p>16. 신 설</p>	<p>제 18 조 (광역취업알선의 금지)</p> <p>① 소장은 <u>여자 및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제를 넘어서는 광역취업알선을 일체 할수 없다.</u></p> <p>② <u>18세 이상 남자의 광역취업알선 시에는 알선과 동시에 관할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별첨 제 18 호 서식에 의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u></p> <p>③ <u>여자 및 18세 미만자의 광역 취업 알선은 서울특별시립 직업안정 기관에 서면 행한다.</u></p> <p>제 23 조 (행정처분)</p> <p>③ 영업정지 30일 이내</p> <p>10. <u>여자 및 18세 미만자의 광역취업</u> : <u>알선을 한자</u></p> <p>④ 영업정지 20일 이내</p> <p>16. <u>광역 취업알선 신고를 하지 아</u> <u>니하거나 태만히 한다.</u></p>

21-20 제 716 호
(별지제 18호서식)

시 보

1979.6.12

광역취업알선신고서

• 구인자 사항

주 소	성 명
상 호	영업감찰번호
전화번호	당회구인수
구직직종	종업원수
임 금	기타근로조건
업종및업태	

상기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1979.

성 명

(인)

• 구직자 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희망지
학 령	친권자명
병역판계	근로조건
상기 구인자 사항에 대한 동의여부	

상기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1979.

성 명

(인)

직업안내소장 의견	
-----------	--

제 ○ ○ 직업안내소장 성 명

(인)

○○구청장 귀하

(별첨 2)

광역 취업알선금지 취지문

1. 광역 취업알선의 정의
 - A 시도의 직업안내소가 타시도 내서 온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소개하는 행위
 - A 시도의 직업안내소가 구직자를 B 시도의 직업안내소에 인도하고 B 시도의 직업안내소에서 구직자를 취업시키는 행위
 - ※ A 시도의 구직자 본인이 직접 B 시도의 안내소에 구직신청하고 이를 B 시도내에 소개시키는 행위는 광역 취업알선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광역 취업알선 금지대상 : 여자 및 18세 미만자
3. 금지취지
 - 가. 청소년, 특히 무의무탁한 여자 근로자가 연고지역의 직업안내소에 의해 타시도로 부터 온 구인자 또는 중개인을 거쳐 원거리 기지촌등의 유흥업소 및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업소에 반강제적으로 종사할 것을 강요당하여, 여자의 경우 윤락의 길로 전락하는 예가 많음.
 - 나. A 시도의 직업안내소가 구직자를 B 시도의 직업안내소에 인도하고, B 시도의 직업안내소에서 구직자를 B 시도에 소개시키는

과정에서 A, B 양시도의 직업안내소가 구직자로 부터 교통비, 숙식비, 소개료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영세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음.

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광역취업 알선을 받은 청소년과 부녀근로자에 대하여 구인자는 음식, 의류, 화장품등을 위상으로 제공하고 파다한 부채를 지우며 이를 미끼로 부도덕 또는 불법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음.

라. 2 중직업안내소는 사회의 동거로서 이상과 같은 부조리로 부터 청소년과 부녀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구인처의 일태, 근로조건, 근로환경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직자를 소개하여 이같은 부조리를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있는바, 특히 시도의 경계를 넘는 경우 구인처의 일태등을 파악하기 곤란함.

마. 아울러 2 중직업안내소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자도에 위임되어 있어 광역취업알선에 따른 부조리의 파악 및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